

한 국 체 육 인 회

수 신 회원각위

참 조

제 목 제57회 정기총회 안내

제57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년 3월20일(목) 14:00

나. 장 소 :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강당(1층)

다. 기 타 : 2025.03.18.(화) 17:00시 까지

참석여부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420-4318)

- 첨부 : 1. 제57회 정기총회 안건 자료 1부.
2. 전차회의록 1부, 끝.

한 국 체 육 인 회 장

(직인생략)

기안자 이미화 사무국장 허창봉 사무총장 한명우

시행 25-018 (2025.03.06) 접수 ()

우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40호

전화 (02) 420-4318 전송 (02) 423-6634 / <http://www.kasf.or.kr>

수 지 결 산 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 주 계좌 수지내역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전기이월	11,275,748	인건비	26,944,200
년회비	(명단별첨) 15,641,615	퇴직연금	4,700,000
고 나정선 부회장	1,000,000	세금과공과	487,440
유재총 부회장	500,000	통신비	3,371,590
조재기 부회장	1,000,000	업무추진비	15,893,300
이용기 이사	500,000	지급수수료	1,009,529
황규옥 이사	500,000	4대보험및예수금	14,901,670
김명조 이사	1,500,000	회의실 사용료	110,000
송양자 편찬위원	200,000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800,000
전용섭 재무위원장	200,000	소모품비	1,546,200
임석호	200,000	여비교통비	566,400
윤병수	200,000	자산취득비	330,000
김영섭	200,000	생일선물계좌로 상환	8,981,000
김태웅	200,000		
구본칠	200,000		
정경애	200,000		
이예숙	200,000		
워크숍 참가비	4,340,000		
워크숍 제약회사 홍보비	1,000,000		
차용금(목적사업계좌)	5,000,000		
회의실사용 반환금	40,000		
예수금	1,696,060		
기타수입	37,000,000		
수입이자	9,485		
		소계	79,641,329
		잔액	3,161,579
합계	82,802,908	합계	82,802,908

■ 생일선물(88세이상)전용 수지내역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전기이월	5,346,610	조병현, 남주현, 홍용명, 김만용, 이규성, 민흥섭, 남갑균, 허정욱, 이해정, 이명실, 고두현, 정용학, 박해만, 손형구, 조은선, 이상계, 이재희, 유종린, 조윤근, 라종극, 황의경, 유근림, 김진원, 김선경, 김응렬, 강희규, 양재성, 장명희, 김백수	1,248,000
차입금(전용계좌)	8,981,000	이체수수료	5,000
수입이자	9,402		
		소계	1,253,000
		잔액	13,084,012
합계	14,337,012	합계	14,337,012

■ 목적사업 수지내역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진수학 회장	50,400,000	콘도분양권	6,960,000
김문일 이사	850,000	조의금(故 나정선 부회장)	300,000
신청수 회원	800,000	올림픽 메달리스트 간담회	1,300,000
한국체육인회	50,000	원상욱 부회장 교통비 지원	300,000
수입이자	16,917	지회장 간담회(인천, 경기, 충북)	472,000
		공원출입차량등록	120,000
		임원 출판기념 기부	500,000
		재무위원회 간담회 경비 지원	200,000
		체육대회 초청장 카드 인쇄	75,460
		전 회원 생일카드제작 인쇄	687,500
		콘도등기수수료	384,080
		홈페이지제작비	1,980,000
		체육대회 체육복 추가 제작(70벌)	1,011,000
		체육대회 태릉선수촌 관리비	300,000
		체육대회 도시락	3,480,000
		체육대회 이벤트 회사	2,690,000
		체육대회 주류,생수,음료 기타 소모품	547,080
		체육대회 바베큐	1,700,000
		체육대회 간호사 수당	200,000
		체육대회 용품 운반 용달비	70,000
		체육대회 과일	925,000
		이체수수료	4,500
		한국체육인회 대부	5,000,000
		소계	29,206,620
		잔액	22,910,297
합계	52,116,917	합계	52,116,917

제 예 금 명 세 표

2024. 12. 31
(단위 : 원)

은행명	계좌번호	금 액	비고
KEB하나	224-890003-34504	3,161,579	한국체육인회
KEB하나	252-910023-18404	13,084,012	88세이상 생일선물 전용계좌
KEB하나	224-910042-09205	22,910,297	회장 목적사업 전용계좌
합 계		39,155,888	

퇴 직 예 치 금

2024. 12. 31
(단위 : 원)

구 분	계 좌 번 호	금 액
퇴직연금 (KEB하나은행)	252-910060-93952	63,084,072
합 계		63,084,072

예금 (투자) 신탁잔액증명서

예금주 : (사)한국체육인회 님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 215-82-04152

금	삼천구백일십오만오천팔백팔십팔원	(₩ 39,155,888)
	(단, 미결제 타점권 0	을 포함)

계좌번호 계정과목 (공동명의 예금여부)	위탁자 원본수익자 이익수익자	계좌잔액 (평가금액) (잔액좌수)	미결제타점권 제한사항 질권설정금액 외부질권해지일자
224-890003-34504 기업자유예금		3,161,579	0 제한사항없음 질권금액없음
224-910042-09205 보통예금		22,910,297	0 제한사항없음 질권금액없음
252-910023-18404 기업자유예금		13,084,012	0 제한사항없음 질권금액없음
	이 하	여 백	

위 금액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투자]신탁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위 기준일자와 아래의 발급일자가 다를 경우 기준일 이후 잔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1. 위탁자와 수익자(원본, 이익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타익신탁)
- 2. 투자신탁(수익증권), 기준신탁 상품의 평가금액은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중도해지수수료,세금공제전)이며 향후 변동 가능합니다.
단,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 3. 미결제 타점권은 입금내역중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등을 말하며 만일 부도처리 될 경우 금액에서 차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일 : 2025년 03월 06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내용 일치여부는 당행 홈페이지 '빠른조회 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MaSmartDetector)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4년 회비 납부자 명단

- 2024년 12월말 기준
- 평생회비 납부자 포함
- 종목별, 가나다순

종목	성 명
검도	한명화,
골프	
궁도	백상봉, 손철현, 신상엽, 신청수, 이종구, 장기설, 장영수, 주재규
근대5종	
농구	김재순, 김정숙, 故나정선, 故배수옥, 성화자, 윤병수, 윤석오, 윤영자, 윤옥자, 윤희중, 이광자, 최신자, 최인자, 한옥수, 한춘자
댄스스포츠	조규청
력비	강용길
레슬링	고윤길, 김동, 김봉조, 김영규, 김영성, 김태동, 박영철, 배기열, 안진기, 안천영, 안한영, 윤석구, 이용현, 이원영, 전도부, 정동구, 정용남, 주성만, 최혁수, 홍기섭,
바둑	
바이애슬론	김석룡,
배구	곽민주, 김길선, 김명옥, 김보경, 김용태, 김윤숙, 김태웅, 나혹진, 박병림, 박범창, 박영근, 박영자, 박영희, 서숙자, 서희숙, 송재현, 오명임, 오영자, 우철우, 유희순, 윤송자, 이남희, 이병두, 이병화, 이세정, 이순옥, 이은옥, 이연순, 이재웅, 이효순, 이효정, 임경숙, 임승숙, 장명도, 전용섭, 정용옥, 조배호, 조윤근, 조현인, 채순득, 최나영, 한순덕, 현희숙, 황규옥, 황승언
보디빌딩	강근웅, 김기선, 김현호, 김환, 최벽순, 태수섭,
복싱	권영선, 김구영, 김상만, 김승미, 박형춘, 박형호, 배황호, 성기량, 손용철, 양명근, 유기중, 이용선, 이흥재, 임형운, 정명섭, 조민, 조영길, 최진태, 최창석,
빙상	노문자, 박춘실, 신건조, 양태식
사격	갈소미, 강경식, 강태식, 김용철, 노기중, 박종길, 안재홍, 윤덕하, 이한우, 장기은, 조남규, 하윤수, 현미경
성화회	
수영	송재웅, 신영상, 조병제, 지봉규
승마	
씨름	이기수, 편석우,

종목	성명
야구	김우덕, 김응렬, 류상호, 윤정현, 이재철, 임경고, 전정현, 조복연, 조창진, 최호국, 하일, 황언용,
양궁	
역도	원신희, 염동철, 이종갑, 정운함, 정춘용
유도	김낙천, 김도현, 김민수, 김송원, 김영석, 김재엽, 김천년, 도성렬, 박명신, 송병무, 신성모, 여광식, 여운창, 이상목, 이성재, 이태운, 장주호, 전한식, 정우식, 정현택, 조재기, 최용배,
육상	강선옥, 김명조, 김양수, 김양중, 김영배, 김정준, 김차환, 나영길, 남청웅, 백승현, 송양자, 신상옥, 안종호, 양기동, 양석후, 양형호, 윤덕민, 윤상순, 윤우상, 이기영, 이만수, 이수영, 이영재, 이정구, 이정원, 이준, 이창준, 임상규, 임석호, 임을용, 임장환, 장광현, 전두안, 전윤진, 정교모, 정확자, 정해성, 조성용, 주형걸, 진수학, 채갑진, 최관용, 한진문, 허창우, 홍경생, 황점술
자전거	권중현, 김상수, 김정길, 신대철, 이영규, 이용환, 정용택
정구	김명희, 심창규, 이기충, 장정순
체육학회	김미량, 김지태, 박채희
체육행정	박주한, 차화정
체조	남진우, 박건서, 엄규섭, 윤익섭, 이덕분, 이석재, 이양자, 정봉순, 최수길, 최영조, 한수희
축구	곽광남, 오인복, 이관형, 차영식, 최길남
컬링	
탁구	박광석, 박병춘, 함금주
태권도	강광섭, 김경섭, 김민성, 김정완, 김창기, 박상학, 백국현, 엄광섭, 유병천, 윤여용, 이규현, 임동본, 임성근, 전영만, 정시래, 진종호, 최대일, 최승규, 홍성무, 황용의
테니스	김문일, 김원자
파크골프	이수원, 정경애
펜싱	강영국, 김경희
한궁	
합기도	
해양레저	현익준
핸드볼	김영섭, 박천조, 유재충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 2024년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무업무
및 재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재무제표에 의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2 월 7 일

감 사 : 김 양 중 (인)

감 사 : 최 인 자 (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정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전개
- 세부 추진 방향
 - 원로체육인 복지증진 사업
 - . 은퇴 유공원로체육인 지원 사업
 -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 사업
 - . 한국청소년 체육상 시상
 - 은퇴한 체육인 구심점 구축과 결집을 위한 사업
 - . 은퇴체육인의 결집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 . 은퇴 원로체육인 워크숍
 - 기타
 - . 소식지 발간
 - . 기타

■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명	예산(안)	일시	장소	비고
유공원로체육인 지원	54,000,000	연중		
한국체육인회 워크숍	20,400,000	5월중	미정	
은퇴체육인 화합한마당	7,000,000	10월말	태릉선수촌	
제28회 청소년 체육상	22,000,000	11월중	미정	
소식지 발간	7,000,000			2회
기관운영비(인건비)	69,600,000			연중
계	180,000,000			

*** 기금사업 관리기관장의 승인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 및 예산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한국체육인회 자체 사업계획(안)

사업명	예산(안)	일시	장소	비고
제57회 정기총회	3,000,000	2025.03.20.(목) 14:00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한국체육인회 워크숍	15,000,000	10월초	미정	
한국체육인회 화합한마당	10,000,000	10월말	태릉선수촌	
한국체육인회 생활곤란자 지원	3,000,000	미정		
체육발전에 관한 세미나 개최	5,000,000	미정	미정	
한국체육인회 회원 걷기대회	3,000,000	4월중	올림픽공원	
봉사활동비	10,000,000	연중		
지회 지원금 지원	3,000,000	연중		
계	52,000,000			

*** 본회 사정에 따라 사업 및 예산이 변경 될 수도 있음**

정관 개정 전·후 대비표(안)

2025. .

한 국 체 육 인 회

장·절	개정 전	개정 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eaders(약칭 KASL)라 칭한다.(개정 08.8.29)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eaders(약칭 KASL)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회,(해외지회 포함)를 둘 수 있다. (개정 08.8.29).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체육인 후진 양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지원하며, 원로체육인에 대한 복지사업과 운동정신의 보급, 확산등을 통한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체육인 후진 양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지원하며, 원로체육인에 대한 복지사업과 운동정신의 보급, 확산등을 통한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 2.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실시 3. 원로체육인에 대한 복지향상등 각종 지원사업 4. 원로체육간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5. 운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 6.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자료에 응하는 업무 7.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8.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관 및 발간, 배포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8.8.29)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 2.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실시 3. 원로체육인에 대한 복지향상 등 각종 지원사업 4. 원로체육간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5. 운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 6.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자료에 응하는 업무 7.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8.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관 및 발간, 배포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4조 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08.8.29)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4조 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08.8.29)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지지하며 지원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경기인 출신 및 체육계에 공헌이 있는자(국외거주자 포함)로서 55세 이상의 남자와, 45세 이상의 여자 2. 명예회원은 체육단체와 관련이 있는 기관장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지지하며 지원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경기인 출신 및 체육계에 공헌이 있는자(국외거주자 포함)로서 50세 이상의 남, 여 2. 명예회원은 체육단체와 관련이 있는 기관장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가 3. 본회에 대한 건의권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가 3. 본회에 대한 건의권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회원의 자격요건을 상실 하였을 때	제10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회원의 자격요건을 상실 하였을 때
	제11조(회원 관련 규정) 회원의 입회절차, 회비의 부담,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원 관련 규정) 회원의 입회절차, 회비의 부담,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개정 08.8.29) 4. 감사 2인 ③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 08.8.29)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을 두며, 수석 부회장 및 직능 실무부회장을 둔다. 3. 이사 25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4. 감사 2명 ③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이 경우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이 경우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원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되 회원중에 자격을 소지한자가 없을시 재무,회계에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중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결원시 나머지 부회장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개정 08.8.29) ④. 제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추대, 위촉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추대, 위촉 임원을 둔다. ① 추대임원, 명예이사장(전임 이사장 추대) 고문 약간명 ② 위촉임원 재무위원 약간명 심사위원 약간명 편찬위원 약간명 ③ 추대임원 및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④ 추대임원 및 위촉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추대임원은 이사장 자문에 응하고, 위촉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08.8.29)	제17조(추대, 위촉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추대, 위촉임원을 둘 수 있다. ① 추대임원, 명예회장(전임 회장 추대) 고문 약간명 ② 위촉위원 기획·운영위원 약간명 (신설) 회원관리위원 약간명 (개정) 재무위원 약간명 편찬·홍보위원 약간명 (개정) 여성위원 약간명 (신설) 사업위원 약간명 (신설) 봉사위원 약간명 (신설) ③ 위촉임원의 종류와 그 임무,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④ 추대임원 및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⑤ 추대임원 및 위촉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추대임원은 회장 자문에 응하고, 위촉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⑦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총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08.8.29)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7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전자문서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08.8.29)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5조 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구성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08.8.29)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5조 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구성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개정 `08.8.29)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3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개정 `08.8.29)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척 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6조(제척 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08.8.29)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5조 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5조 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삭제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 한다. ② 이사회 의결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 행사를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 한다. ② 이사회 의결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 행사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회장 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 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처리)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긴급처리) 회장 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 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제척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34조(제척사유)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분과 위원회	제35조(설치) ① 본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무위원회, 심사위원회, 편찬위원회를 둔다.	제35조(설치) ① 본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재무위원회, 편찬·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사업위원회, 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신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제36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6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7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37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신설	제38조(기획·운영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신설)
	제39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각종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39 (회원관리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각종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40조(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40조(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41조(편찬위원회) 편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2.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자료수집 및 보관 과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 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 사항	제41조(편찬·홍보위원회) 편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2.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자료수집 및 보관과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 사항
	신설	제42조(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여성회원에 관한 사항 2. 본회 제반행사의 업무지원
	신설	제43조(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호회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제44조(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 및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에 관한 사항 2. 국가적인 재난에 따른 재난 당사자 및 피해복구 참여인 력에 대한 현장 식음료 및 구호품 서비스지원 3.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재난 사항
제7장 지회	제45(지회) ① 본회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5조 (지회) ① 본회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6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 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 입되는 재산 ③ 본회의 재산 중 제2항 각호 이외의 재산 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6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 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③ 본회의 재산 중 제2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7조(재산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교환, 기채하거나 의무의 부담과 권리를 포기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08.8.29)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7조(재산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교환, 기채하거나 의무의 부담과 권리를 포기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8조(수입금)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48조(수입금)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8.8.29)	제5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사무처	제51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제51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제52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2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3조(운영규정)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3조(운영규정)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10장 보칙	제54조(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해산한다.(개정 `08.8.29) ②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개정 `08.8.29)	제54조(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55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08.8.29)	제56조(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당시 사회단체 한국체육인동우회에 등록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당시 사회단체 한국체육인동우회에 등록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2024년 임시총회 회의록(요약)

■ 성원보고

사회자 : 오늘 총원 498명 중에서 131명이 참석하여 본회 정관 제22조 1항에 의거 총회 개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개회

회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타

■ 국민의례

사회자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묵념, 애국가 제창)

■ 개회사

사회자 :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 : 안녕하십니까? 제가 체육인회에 들어온지 오래 되었지만 회장이 된지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임기가 한 2년 남았는데, 그동안 체육인회 발전을 위한게 목적이었는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이 위축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어 끝까지 책임을 다 못하고 그만두게 된 것은 체육인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무척 아쉽지만 지금 그만두는 것이 체육인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제 사의에 대한 인준을 받고,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차기회장의 인준을 받으면 됩니다. 이사회에서 진수학 부회장이 추천을 받았기에 인준을 받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회원일동 : 박수

김창규 :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진수학 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인준해 주시겠습니까?

회원일동 : 박수 -3타

김창규 : 이로써 저는 물러나고 진수학 부회장에게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 한가지 물어 볼 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차기회장은 남은 임기동안만 하는건지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조 : 회장님께서 잔여임기라고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진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수학 : 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들과 체육인회 임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인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한국체육인회가 은퇴선수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회원님들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체육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체육인회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힘써 보겠습니다.
4. 봉사단을 만들어 국가 재난발생시 체육인회가 앞장서서 체육인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일하는 집행부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임 임원들은 그대로 모시되 일 할수 있는 보직변경은 해야 될 것 같으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도 함께 한국체육인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배를 존경하며 모시고 후배들을 아끼는 것이 우리 체육인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원: 우리는 원로체육인들이므로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학 : 지난번에 하지 못한 취미 동호회 사업도 부활시켜 추진해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3타